

채무부존재확인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대법원
사건번호	2018두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채무부존재확인
원고	□□□□□ 주식회사	피고	인천광역시
판결선고일	2019. 1. 17.	비고	(1심)인천지방법원 2015구합○○○○○ 2017. 5. 11. 원고일부승소 (2심)서울고등법원 2017누○○○○○ 2018. 8. 17. 원고패소
사건개요	원고는 피고의 2007 ■■■초외 3교 신축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에 의거 2008. 실시협약을 맺은 당사자로 피고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,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일반바를 시공하여 운영하였음. 복도측 외부 창호는 일반바로 시공하여도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단열바를 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창호보강공사를 할 의무가 없는 바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함		
주문	1. 상고를 기각한다. 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○ 청구취지 -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. 목록 기재 시공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 원고가 2008. 2. 28.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'인천 ■■■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실시협약'에 기한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한다 ○ 항소취지 -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○ 상고취지 -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		
판결이유	○ 원고의 각 복도-외부간 창호 설계·시공의무 존재(2심 판결 인정) - 이 사건 성과요구수준서의 목적 및 이 사건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칙적으로는 이중창호를 설계·시공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단열창 및 단열바 등 이중창호의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창호의 설계·시공을 허용하므로 원고가 복층유리 및 일반바를 설계 시공한 것은 조항 위반임. - 원고는 각 복도측 외부면 창틀을 단열바로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 체결 이후, 시공의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피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, -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협약을 토대로 작성한 시행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일 뿐이므로,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시행협약에 의해 확정됨.		
결론	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(원고의 각 복도-외부간 창호 설계·시공의무 존재)		